

2021년도 제3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○ 일 시 : 2021. 12. 17.(금요일)

○ 방 법 : 온라인심의

2 ○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
- 심의위원 : 신창환(분과위원장), 김연희, 심장섭, 위정현, 하병현 위원

○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○ 의결사항 ※ 안건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·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(안전번호 제2021-178260호~178319호).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금회 심의 대상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- B 위원: 순번 1번~60번 { ‘◇◇◇◇◇’ 사이트의 ‘[중점](영화)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(2021))’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C 위원: 순번 1번~60번 { ‘◇◇◇◇◇’ 사이트의 ‘[중점](영화)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(2021))’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: 순번 1번~60번 (영화)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’ , ’레드 노트스’, 언포겟터블’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써, 이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

- E 위원: 순번 1번~60번 { ‘◇◇◇◇◇’ 사이트의 ‘[중점](영화)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(2021))’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
2021년 제3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2. 17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위정현

위원 하병현